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59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정희용 · 김기웅 · 구자근
윤재옥 · 박충권 · 최수진
고동진 · 박준태 · 임종득
김종양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 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를 “(경로당 급식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입비의”를 “구입비,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토요일·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한다)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식 제공의 대상·기준·운영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u>구입비</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 급식 지원 등) ① ----- ----- ----- -----구입비,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토요일·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한다)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식 제공의 대상·기준·운영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